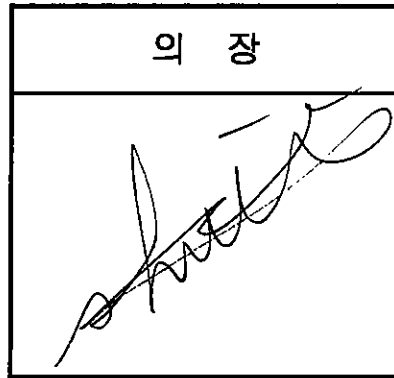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의원발의 의안 철회



No-164



2019. 5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발의 의안철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(의안·동의의 철회)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

철회의안 개요

- 의 안 명 :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의안번호 : 562번
- 발의의원 : 이영실 의원 외 10명
- 회부일자 : 2019. 4. 3

소관상임위원회 : 보건복지위원회

철회요구일자 : 2019. 5. 24.

철회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개정^{의정}을 위한 토론회」(2019. 4. 11.)에서 제안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, 동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해 수정된 개정안을 발의

철회절차

-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.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□ 조치사항

- 해당 철회청구건은 2019. 4. 3.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회의제가 되기 전이므로, 철회를 허가하고 철회사실을 철회요구의원과 해당위원회(보건복지위원회)로 통보.

- 붙 임 1.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구서 1부.
2.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..05.29
의장